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태 성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18
----------	------

발의년월일 : 2020년 2월 5일

발 의 자 : 김경우, 유 용, 김제리, 김화숙,
이승미, 김경영, 김호평, 김정태,
박순규, 한기영, 이성배,
이태성 의원(12명)

1. 제안이유

- 사회투자기금은 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출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으나, 조례에서 이를 “출연금”으로 명시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예산과목으로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3조제2항제1호, 같은 조제3항의 “출연금”을 “기금전출금”으로 각각 변경함.

- 출 연 금 : 지자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의거 민간 및 법인에게 지원하는 경비
- 기금전출금 : 법령 및 조례에 의해 자치단체가 직접 관리하는 기금에 전출하는 경비

나. 제명 등 띄어쓰기 기준에 따라 정비함(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참조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제3항의 “출연금”을 각각 “기금전출금”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기금운용관은 기금업무 소관 국장으로 하고 분임기금운용관은 기금업무 소관 부서장으로 하며,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다만,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 중 지출의 원인행위(계약사무 포함) 및 지급명령 사무에 대해서는 기금사업비 집행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에서 정하는 관서 회계관계공무원을 기금관리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 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기금의 조성) ① 시장은 이 조 례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자 금을 확보·공급하기 위해 서울특별 시 사회투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p> <p>② 기금의 조성은 다음 각 호의 재 원으로 한다.</p> <p>1. 일반회계로부터의 <u>출연금</u></p> <p>2. ~ 4. (생략)</p> <p>③ 시장은 제2항제1호에 따라 서 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u>출 연금</u>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u>출연</u>할 수 있다.</p> <p>제5조(<u>기금관리 공무원</u>) ① 기금 운용관은 기금업무 소관 국장으로 로 하고 <u>분임기금 운용관</u>은 기금 업무 소관 부서장으로 하며, <u>기 금 출납원</u>은 기금업무 <u>담당 사무 관</u>으로 한다. 다만, <u>기금관리 공 무원</u>의 사무 중 지출의 원인행위 (계약사무 포함) 및 지급명령 사 무에 대해서는 기금사업비 집행</p>	<p>제3조(기금의 조성) ① 시장은 이 조 례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자 금을 확보·공급하기 위해 서울특별 시 사회투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p> <p>② 기금의 조성은 다음 각 호의 재 원으로 한다.</p> <p>1. 일반회계로부터의 <u>기금전출금</u></p> <p>2. ~ 4. (현행과 같음)</p> <p>③ 시장은 제2항제1호에 따라 서 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u>기 금전출금</u>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 산에 반영하여 <u>전출</u>할 수 있다.</p> <p>제5조(<u>기금관리공무원</u>) ① 기금운 용관은 기금업무 소관 국장으로 하고 <u>분임기금운용관</u>은 기금업 무 소관 부서장으로 하며, <u>기금 출납원</u>은 기금업무 <u>담당사무관</u> 으로 한다. 다만, <u>기금관리공무 원</u>의 사무 중 지출의 원인행위 (계약사무 포함) 및 지급명령 사 무에 대해서는 기금사업비 집행</p>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하는 관서 회계 관계 공무원을 기금관리 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 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에서 정하는 관서 회계관계 공무원을 기금관리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 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